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02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손 솔 · 이주희 · 김 윤  
윤종오 · 정혜경 · 전종덕  
황운하 · 윤준병 · 임미애  
용혜인 · 최혁진 · 김종민  
한창민 · 전진숙 · 이용우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뉴스통신의 독립성·중립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합뉴스 사장 선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뉴스통신진흥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계약사 및 내부 구성원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음.

이에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편집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합뉴스사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5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2항).
- 나. 연합뉴스사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편집책임자를 임면하되, 편집분야 직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가 임면하도록 함(제18조의4 신설).
- 다.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준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함(안 제20조).
- 라.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은 11명으로 하고, 국회 교섭단체·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 등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방식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26조).
- 마.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 또는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확대함(안 제28조).
- 바. 이사회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대표이사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이 기간동안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이사회에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0조제6호 신설).

아. 이사회에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임직원 위원과 국민 위원으로 구성하되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구성”을 “그 밖에 수용자권익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③ 연합뉴스사는 수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8조의3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수용자권익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④ 수용자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연합뉴스사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추천하는 사람 5명

③ 연합뉴스사는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편집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합뉴스사가 편집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연합뉴스사의 편집책임자 임면 등) ① 연합뉴스사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편집책임자를 임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책임자는 편집분야 직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책임자 및 임면 동의권을 갖는 편집분야 직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18조의3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를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순비용(純費用)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비용의 산출 방식 및 정산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7명의”를 “11명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이사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숫점 이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배분하며 소숫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	=	3	×	해당 교섭단체 의석수	÷	각 교섭단체 의석수의 합계
------------------	---	---	---	----------------	---	-------------------

2. 연합뉴스사 임직원 과반수가 뉴스통신 전문성과 뉴스통신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3. 한국신문협회 · 한국방송협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4. 한국기자협회 · 방송기자연합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5. 한국언론학회 · 한국방송학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6.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수용자권익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은 연합뉴스사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 또는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4항 단서 중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를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대표이사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⑥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대표이사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 의 대표이사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3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으로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3으로 한다.

1. 임직원 위원: 연합뉴스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직종·근속연수·근무지역·성별 등을 고려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사람

2. 국민 위원: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 추출된 사람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대표이사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개의한다.
- ⑥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⑦ 이사회는 국민 위원 구성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원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대표이사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회의 이사회 및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회의 이사회 및 연합뉴스사의 수용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진흥회의 이사,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및 수용자권익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략)

<신 설>

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연합뉴스사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사람 5명

③ 연합뉴스사는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편집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합뉴스사가 편집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8조의4(연합뉴스사의 편집책임자 임면 등) ① 연합뉴스사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



제2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과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후단 신설>

<신설>

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임원) ① -----  
-----11명  
의-----.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이사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숫점 이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배분하며 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숫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천하여 결정한다.

각 교섭단 체별 추천인 수	= 3 ×	해당 교섭단 체 의석수	÷	각 교섭단 체 의석수 의 합계
----------------------------	-------	-----------------------	---	------------------------------

2. 연합뉴스사 임직원 과반수가 뉴스통신 전문성과 뉴스통신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3.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4.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5.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6.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수용자권익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p>⑤ ~ ⑧ (생략)</p> <p>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u>진흥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u></p>	<p><u>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은 연합뉴스사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u>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u></li><li><u>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u></li><li><u>3. 추천 이유</u></li></ol> <p>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p> <p>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 또는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u>1.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u></li><li><u>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li><li><u>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li><li><u>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u></li></ol>
---	---



<신 설>

<신 설>

⑤ ~ ⑦ (생 략)

제30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 5. (생 략)

추천한 대표이사후보자에 대하  
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  
적이사 5분의 3-----  
-----.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  
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  
점자(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  
면 최고득표자 모두를 대상으  
로 한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⑥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  
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대표이  
사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 의 대  
표이사 추천 시 그 절차와 과  
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  
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⑦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30조(이사회 기능) -----  
-----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생 략)

<신 설>

6.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 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0조의2(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으로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3으로 한다.

1. 임직원 위원: 연합뉴스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직종·근속연수·근무지역·성별 등을 고려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사람

2. 국민 위원: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 추출된 사람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추천

국민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대표이사후보자 경영계획 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 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개의한다.

⑥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 이사회는 국민 위원 구성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원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대표이사후보추천

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대표이사후보자 추천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